

문서번호	대학평의원회-
보고일시	2024.03.26.
공개여부	공개

결 재	주무관	간사	부의장	의장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1. 일시 : 2024.03.13. 16:00-18:00
2. 장소 : 진수당 3층 대회의실
3. 참석 위원 : 14명(대학평의원회 의원)
 - 불임 참조
4. 배석자 : 2명
 - 전북대학교 교무처장 이동현
 - 전북대학교 기획처장 백기태

5. 회의 안건

- 가.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재입학 조항 현행화, 약대 휴학 학기 명시
- 나.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통합과정에 대한 휴학 학기 명시
- 다.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연공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 라.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산학협력단을 총장 직속의 본부지원시설로 추가
 - 지역혁신전략실 폐지
 - JBNU IR센터 신설 및 교육성과관리센터 폐지

II 회의 결과

구 분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당연제적조항과 연관된 재입학 조항 현행화 - 약학대학 편입생 및 통합 6년제 휴학 학기 명시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통합과정에 대한 휴학 학기 명시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연계전공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명시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산학협력단을 총장 직속의 본부지원시설로 추가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지역혁신전략실 폐지 - JBNU IR센터 신설 및 교육성과관리센터 폐지

◆ 전북대학교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학칙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으로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심의함

1. 개회 선언 및 인사

- 의장 : 전체 위원(22명) 중 참석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2. 안건 심의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재입학 조항 현행화, 약대 휴학 학기 명시

- 당연제적조항과 연관된 재입학 조항 현행화(안 제42조제2항)
- 약학대학 편입생 및 통합 6년제 휴학 학기 명시(안 제52조)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통합과정에 대한 휴학 학기 명시

- 통합과정에 대한 휴학 학기 명시(안 제9조)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연계전공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명시

- 연계전공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제1항)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산학협력단을 총장 직속의 본부지원시설로 추가(안 14조 및 제14조의18)

Q) 산학협력단을 독립기구로 만들었던 이유가 연구비와 창업, 대학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의 필요 때문에 분리되었는데 다시 지원시설로 돌아가게 되면

첫번째 산학협력단의 독립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두번째 글로컬 사업의 예산 흐름 때문에 대학 회계를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가?

A) 첫번째 산학협력단은 학칙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들도 알아보니 부산대에서도 지원시설에 산학협력단 관련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번째 산단에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일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대학 회계의 상당 부분을 집행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해됩니다.

대학 회계는 재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단순히 우리 등록금 수입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까지 포함된 총괄적인 대학 회계가 재정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정위원회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재원들 또한 이중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이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산단 회계하고 대학 회계는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원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나의 기구에서 산단 회계하고 대학 회계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가?

현재는 법리적으로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학칙에 산학협력단을 지원시설로 편입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단 회계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대학 회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경우 학칙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부산대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지원시설이 었는지, 글로컬30을 위해 지원시설로 편입시킨 것인지?

A) 글로컬30 이전부터 계속 지원시설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산학협력단은 본부 조직하에 있었는데 이 사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할 수 있어 분리를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리를 하고 보니, 대학 회계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산학협력단을 지원시설로 편입했습니다.

Q) 재정위원회에서 잘하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교수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 산학협력단에서 회계 처리를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A)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산학협력단은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별도의 조직인데 사실은 학교 조직의 일부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설명한 것이 학칙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산학협력단은 법인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산학협력단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으로서의 별도의 조직으로 연구비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 본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학교 조직의 일부로서의 기능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학협력단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를 어떤 거버넌스 구조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8월 1일 이후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분리를 하고 보니, 운영 과정에서 대학 회계를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부속시설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찾았고 이런 방안의 사례를 찾아보니 부산대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교수평의회에서 해주신 질문과 동일하게 부산대에 ‘산단회계와 학교 회계가 혼용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냐’ 물었더니 ‘재정위원회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 재정위원회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까지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전북대학교는 법인이 아닌데 전북대학교 지원시설로 법인을 둔다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닌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거 같다. 왜냐하면 산단 회계 감사를 하는 회사에서 대학 회계를 감사한다는 것이 월권에 해당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처라는 본부 조직으로 두는 게 더 좋은 거 같다는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수회에서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다.

혹시 이 사안이 급한 사안인가.

A) 지금 글로컬 대학 사업의 추진 과제 1번을 산학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칙 개정안이 사실은 지난 1월에 저희 기획처에서 검토를 올렸는데 방학 중에 총회가 열리기가 좀 어려워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나 사실은 우려가 완전히 다 해소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법인인데 전북대학교 안에 법인이 있는 형태가 산학협력처가 되어 본부의 조직이 되느냐, 지원시설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Q) 교육부가 주는 사업의 예산의 범주에 얼마를 산단 쪽으로 전출시켜서 쓸 수 있더라는 체제가 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안 되는지?

A) RIS 사업 집행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RIS 집행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 연구를 수행함에도 대학 회계로 집행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 회계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글로컬 사업의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한 사용 목적이나, 금액 내에서 산단에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안 되는지?

A) 학칙에 그런 내용을 넣게 되면 학칙에 벗어나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학칙을 개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 그렇다면 규정에서라도 산학협력단에서 글로컬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 지역혁신전략실 폐지(안 별표4 부속시설)

○ JBNU IR센터 신설 및 교육성과관리센터 폐지(안 별표4 부속시설)

3. 폐회 18:00

[붙임]

-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가결
 - 당연제적조항과 연관된 재입학 조항 현행화
 - 약학대학 편입생 및 통합 6년제 휴학 학기 명시
-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통합과정에 대한 휴학학기 명시 : 가결
-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연계전공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명시 : 가결
-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_산학협력단을 지원시설로 추가 : 보류
-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가결
 - 지역혁신전략실 폐지
 - JENU IR센터 신설 및 교육성과관리센터 폐지

붙임 대학평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2024학년도 제1차 전북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서명부

연번	단체명	소속	학부(과)	직급	성명	서명	비고	
1	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김동근		교수회장	
2	교수회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부교수	임재혁		교수의 부회장	
3	교수회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김혜영		교수의 부회장	
4	교수회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김명훈		교수의 사무처장	
5	교수회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	최재현		교수의 평의원	
6	교수회	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배준수			
7	교수회	사회과학대학	역사학과	교수	최용준			
8	교수회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부교수	서형기			
9	교수회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최명숙			
10	교수회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부	교수	박진우			
11	교수회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류오상			
12	직원협의회	학생처	학생과	행정주사	송환상			직원협의회장
13	공무원노동조합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무원주사	장원익			공무원노동조합 전북대지부 지부장
14	공무원노동조합	사범대학	사범대학	비행주사보	정상무			공무원노동조합 전북대지부 부지부장
15	대학노동조합	대학본부	총무과	대학과장	허연		대학노동조합 전북대지부 지부장	
16	조교회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조교	이선숙		조교협의회 부회장	
17	총학생회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학생	송상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18	총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과	학생	현우진		총학생회 사무국장	
19	총학생회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학생	정종인		총학생회 학생복지국장	
20	총학생회	상과대학	경영학과	학생	조민수		상과대학 부학생회장	
21	총학생회	수리과학대학	수리학과	학생	이은환		수리과학대학 학생회장	
22	총동창회	안주군의회			유이수		외부위원	
합계					22명			